

발행인 : 서울특별시 장 양 택 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 진 호

전화 75-761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제 400 호

1973.9.6

시 보

차 례

이
... ..

가을특별시 시민과

- ◎ 훈 령
 - 제 372 호 서울특별시 상수도급수사용료과징사무
처리규정중개정규정..... 3
- ◎ 고 시
 - 제 149 호 반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내 학교
시설변경및지적승인 57
 - 제 150 호 도시계획사업 (관악공원시설) 실시
계획인가..... 57
- ◎ 공 고
 - 제 169 호 1973 년도전기주임기술자자격검정 1 차
시험합격자발표및제 2 차시험장소지정... 60
- ◎ 사 령..... 61
 -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훈 령

◎ 서울특별시훈령제 372 호

서울특별시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 사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73년 9월 6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상수도급수사용료 과징 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

제 3 조 및 제 4 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수전번호 및 수전관리부)

- ① 소장은 급수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전번호발급대장(서식제 1 호)에 등재하고 각구 법정동 고유번호에 그대장 등재순위번호를 붙인 것을 당해 수전의 수전번호로 한다
- ② 수전번호 발급대장에 의하여 수전관리부(서식제 2 호)를 작성하고 양수기의 설치, 교체 및 기타 기록사항을 항시 보완하여 법정동 단위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수전관리부에는 그 첫장에 급수전수현황표(서식제 3 호 및 서식제 4 호)

를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제 4 조 (점검카-드관리) ① 소장은 수전번호 발급대장에 등재된 수전에 대하여는 그 등재와 동시에 급수량점검카-드(서식제 5 호이하 "점검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과징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점검카-드를 교부하였을 때 또는 급수전을 폐전하였을 때에는 점검카드 교부 및 회수대장(서식제 6 호)에 기재하되 급수전을 폐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점검카-드를 과징원으로 부터 회수하여 그 등재순위로 따로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점검카-드에는 급수량의 점검 및 조정내용, 정수처분, 급수중지 및 양수기의 설치, 철거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 5 조 제 2 항중 "서식제 4 호"를 "서식제 7 호"로 한다.

제 6 조 제 3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고량이 누수 기타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량된량이 아닌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차하위의 것으로 조정한다.

제 9 조 제 1 항 중 "서식제 6 호" 를 "서식제 8 호" 로 하고 동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전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용자의 신청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빙서류를 첨부할수없는 경우에는 담당 과장원의 현장 확인복명서를 첨부한 급수업종변경 처리조서로서 가름할 수 있다.

제 10 조 중 "서식제 7 호" 및 "서식제 8 호" 를 각각 "서식제 9 호" 및 "서식제 10 호" 로 한다.

제 1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1 조 (점검일보, 월보) 정례일에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점검부와 점검집계표를 심사하며 점검일보(서식제 11 호) 를 작성하고 점검집계표와 점검일보에 의하여 조정월보(서식제 12 호) 를 각각 작성한다.

제 14 조 제 1 항 중 "서식제 11 호" 를 "서식제 13 호" 로 한다.

제 15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금표는 점검부 단위로 작성하고 이를 집계하여 점검집계표 및 조정명세서와 대사한다.

제 15 조 제 3 항을 삭제하고 제 4 항을 제 3 항으로 하며 동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장은 작성한 수금표를 동단위로 분류하여 납기내 수납정리부에 첨부징수 명령함과 동시에 담당 과장에게 인제하여야 한다.

제 18 조 중 "서식제 12 호" 를 "서식제 14 호" 로 한다.

제 19 조 중 "서식제 14 호" 를 "서식제 15 호" 로 한다.

제 20 조 중 "서식제 15 호" 를 "서식제 16 호" 로 한다.

제 22 조 중 "서식제 16 호" 를 "서식제 17 호" 로 한다.

제 24 조 제 1 항 단서와 동조 제 2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종전업종의 하위 업종으로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서식제 18 호) 또는 과장원의 보고를 접한 월의 사용량부터 변경조정한다.

②전항의 신청 및 보고를 접하기 이전에 정래일의 점검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점검일 이후의 사용량부터 변경 조정한다.

제 27 조중 "서식제 18 호"를 "서식제 19 호"로 한다.

제 28 조중 "서식제 19 호"를 "서식제 20 호"로 한다.

제 31 조중 "서식제 20 호"를 "서식제 21 호"로 한다.

제 33 조중 "서식제 21 호"를 "서식제 22 호"로 한다.

제 35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고지된 금액은 담부의무자가 상업은행 본지점 및 시금고 또는 수도사업소에 자진 납부하거나 또는 과징원이 담부의무자를 방문하여 징수한다.

제 36 조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2 항중 "서식제 22 호"를 "서식제 23 호"로 한다.

①통화계산서는 납기후 징수 및 소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수납할때에만 수금포에 연결된 영수증에 가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41 조 제 1 호 및 제 43 조 제 1 항중 "채납액명세서"를 "채납관리부"로 하고 제 41 조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동조중 제 3 호 및 제 4 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채납관리부에는 징수상황표(서식제 29 호)를 과징원별 동별로 작성 첨부하여 담당 과징계장이 이 계수를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 42 조 제 1 항 제 4 호를 삭제하고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월납기금 및 과년도분은 채납관리부에 소인할것
제 44 조를 삭제한다.

제 4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납기가 경과된 수금표는 채납관리부의 작성시에 일단 회수한다.

②회수된 수금표는 채납관리부와 대사하여 채납관리부의 수금표 영수증 회수확인란에 확인 날인한다.

③확인이 끝난 수금표 및 영수증은 영수증에 "납기경과무효"라 주서 날인하여 담당 과징원에게 돌려준다.

④채납액징수는 통화계산서에 의하여 실시하며 수입보고서에는 수금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46 조 및 제 47 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 48 조 제 2 항 및 제 4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채납액에 대하여는 납기경과후 7
일이내에 10일의 납기한을 불인 독
촉장을 발부하며 동기한이 경과하여
도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정수처분하
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채납미처리사유서(서식제 31호)를
징취하고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④정수처분 또는 강제 징수조치를
하였거나 채납미처리사유서를 징취하
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채납관리부
비고난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 4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정수처분을 하거나 해제하였을 때
에는 정수처분 및 해제조서(서식제
32호)의 정수란 및 해제란을 정
리하고 그 사항을 정수처분 및 해
제대장(서식제 33호)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정수 및 해제사항은 점검카-드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 50 조중 "서식제 37 호" 및 "서식제
38 호"를 각각 "서식제 34 호" 및

"서식제 35호"로 한다.

제 54 조중 "서식제 40 호" 및 "서식
제 41 호"를 각각 "서식제 36 호"
및 "서식제 37 호"로 한다.

제 55 조중 "서식제 42 호" 및 "서식
제 43 호"를 각각 "서식제 38 호"
및 "서식제 39 호"로 한다.

제 57 조중 "서식제 44 호"를 "서식
제 40 호"로 한다.

제 58 조중 "서식제 45 호"를 "서식
제 41 호"로 한다.

제 61 조중 "서식제 46 호"를 "서식
제 42 호"로 한다.

별표 서식제 1 호 내지 서식제 46 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3년 9월 6일 부터
적용한다.

(서식제 1호)

수 전 번 호 발 급 대 장

(구 동)

수 전 번 호	업종	주 소	소유 자 명	구 경	개 전 월 일	진 접 번 호	구 수 전 번 호	직 요

(식식제 2호)

수 전 관 리 부

No. _____ 동

지

요

구수도전번호
진첩번호
개진월일

.....
.....
.....

업	종	소유자명	사용자명	구	경
---	---	------	------	---	---

.....
.....
.....

수 전 번 호	주 소	발급인
---------	-----	-----

양 수 기 설 치 및 교 체

설 치						천 거				
년월일	형 식	재 작 년 도	기 물 번 호	설 치 지	적 요	년월일	기 물 번 호	지 침	사 유	적 요

(서 식 제 3 호)

급 수 전 수 현 황 표

동

년월일	적 요	증 감 전 수		최 종 번 호	공 번 번 호		전 수	화 인	
		증	감		번 호	누 계		계	제 장

(서식 제 4 호)

급 수 전 수 현 황 표

현재

구경별 업종별	13%	20	25	40	50	75	100	150	200	250	300	계
가 사 용												
영 1 종												
영 2 종												
공 업 용												
목 육 탕 갑												
목 육 탕 을												
공 설 공 용												
특 수 용												
소 계												
사 설 소 화 전												
공 설 소 화 전												
소 계												
총 계												

(서식제 5호)

급 수 량 점 점 카 - 드

1973

급수인구	연 명	지 전 수	지전 개	정 호 수	점용 무	업태등급	
급수호수		수세식변소	대 소 개	가압시설	유 . 무	종업원수	명
가구 수		욕 조	대 소 개	보이라장치	유 . 무	접객인원	1일 평균 명
수요전량	연 평	독 탕	영업용독탕터 키	객 실		실 수용인원	명
건물구조	층	저수탱크	용량 m ³	외자대수		대 점포 수	개

점 점 월 일	지침수	사용량	조정량	조 정 액			지정 납기	확 인		비 고
				급수사용료	손료	합계액		점점원	심사	
12							1			
11							12			
10							11			
9							10			
8							9			
7							8			
6							7			
5							6			
4							5			
3							4			
2							3			
1							2			
12							1			72.12.31 전 카드에서 전기

주소	동 가 번지 (통 반)			소유자	양수기 위 치	마당 (앞뒤) 점포내 부업 옥외	출입문 구경 %
종별	수전번호 책	책	호	상용자	업태명 전 화 ()		발급확인

NO.

(서식제 6 호)

접견카드발급및 회수대장

결 재		발급 회수 구분	업 종	수전 번호	소 제 지	소유자	구경	개 전 (회수) 월 일	사 유	수령인 (회수인)	일련 번호
소장	계장										

수도사업소					
(서식제 7 호) 수도계량기검침카드					
월 일			m ³		
검침일자	지 침 수	사 용 량	지정납기 (월)	검검원성명	비 고
종 별		수전소재지		동 가 번지 (통 반)	
수전번호		소 유 자 사 용 자			
<p>※ 수도요금을 내실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받으십시오.</p> <p>여 러 분 의 수 도 안 내</p>					
계량기보호	<p>계량기 위에는 검침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물건이라도 놓여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호통안을 깨끗하게 관리하여 주십시오.</p>				
요금납부	<p>수도요금은 매월 말일안에 수도요금징수원에게 지불하시거나 아래 지정장소에 자진 납부하여 주십시오. 동사무소 상업은행본.지점 수도사업소</p>				
카드보관	<p>이 카드는 계량기가 있는 근처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시고 이사하실 때에는 반드시 다음 이사오시는 분에게 넘겨 주십시오.</p>				
수도요금표					

(제 8 호서식)								급수업종변경처리조서				No.	
주소		동 가 번지 호 (통 반)											
주 전	업 종	번 호		사 용 자		구 경		종 전 업 체 명					
급수 전 실 태	지 전 주	육 탕		수 세 식 수 변 소 (대)		수 세 식 수 변 소 (소)		기 타 급수 장 치 내 용					
	개	개		개		개							
급수 사용 기 록	월	월		월		월		월		당 월			
변경업체	업 태 구분		업 체 명			관 리 자 또는 대 표 자			종 업 원 수				
업 체 내 용	1. 해 가 업 종 2. 영 역 장 규 모 3. 허 가 년 월 일 197 . . .												
특 기 사 항													
적용규정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 16 조 항 ()												
결정업종	에서					로		변경점검		①			
								일 자		197 . . .			
정 리 확 인	점 검 카 - 드	수 전 대 장	체 납 부	심 사 반	계 장	소 장	공 램						
책 번													

62-111

(서식제 9 호)

사용료 점검 및 조정 집계표

소 장 귀 하

계	계	장	소	장	공
					람

점검책호 () 1970년 월 일 동 점검원 인

구 분	총 전 주	조 정 전 수	기본요금		초과요금		합 계		금 수 관 손 료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전 수	금 액	계	
가 사 용												
영 1 종												
영 2 종												
공 업 용												
목욕탕	갑 을											
공 설 공 용												
특 수 용												
사 설 소 화 전												
계												

미 조정 내역

수 전		주 소	성 명	업 체 명	미조정 사유	구 경	비 고
업 종	번호						

62-15

(서식제 10호)

과 정 원 근 무 보 고 서

소 장 귀하

197 년 월 일

등담당

직

성 명

인

월 일 근무중 특기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증 별	수 전 번호	주 소	성 명	구 경	내 용	비 고

주소지약도

4

책 번

접 수 번 호

처 리 일 자

(석식제 11호)

검 검

197 년 월 납기

		가 사 용			영 1 종			영 2 종			공 업 용			목 옥 갑			목 옥 을			공 설 공 용			
검	검	건	수	금	건	수	금	건	수	금	건	수	금	건	수	금	건	수	금	건	수	금	
일	별	수	량	액	수	량	액	수	량	액	수	량	액	수	량	액	수	량	액	수	량	액	

일 보

점검원

특수용			사설소화전			합계			누계			전월실적			전월대비			계	주임	계장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시칙제 12 호)
(3 배복사)

조 정 율 보

조정년월일 197 작성자직명 성명 (인)

관	항	목	절	조 정 내 역				조 정 량		비 고
				금 일		누 계		금 일	누 계	
				전 수	금 액	전 수	금 액			
수 도 사 업 수 익										
영 업 수 익										
급 수 수 익										
급수사용료										
급수관손료										
기 타 영 업 수 익										
양수기매각대										
재 료 매 각 대										
양수기설치수입										
수선공사수입										
재료점사수수료										
영 업 외 수 익										
잡 수 익										
변상위약금										
과태료수입										
잡 수 입										

위와 같이 조정하였기 보고합니다 .

196 년 월 일

수 도 사 업 소 장

수 도 국 장

(서식제 13호)
(3매복사)

조 정 명 세 서

점검월일 : 197 . . .

동	
---	--

납 기 : 197 . . . NO.

수 도 전		납부자 (성명)	사 용 량	조 정 량	조 정 액			소 인	비 고
증 별	번 호				금수사용료	손로	합계액		

62-50

(서식제 14 호)
(2매복사)

세 외 수 입 조 정 결 의 서

197 년 월 일 조정

No.

전대장리	조정원	정부	세외원장기장	접원	제부	과계	정장	계	계장	소장	양결재

조 정 내 역

고지서발부 197

납부기한 197

관	항	목	설	조정량	조정전수	조정금액	비고
기	간	수익	영				
	영	업	수익				
		급	수				
		수	익				
			가 사 용				
			영 1 총				
			영 2 총				
			공 업 용				
			복 육 탕 갑				
			복 육 탕 을				
			공 설 공 용				
			특 수 용				
			사 설 소 화 진				
			급 수 관 손 수 료				
		기 타	양 수 기 매 각 대				
		영 업 수 익	수 선 공 사 수 입				
	영 업 의 수	익	시 설 비				
		잠 수 익	과 태 료				
			위 약 년 상 금				
			재 료 매 각 대				

(서식제 15호)

197 년 도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계 장	담 당 자	일 련 번 호	조 정		적 요	급수사용료			급수관손료	
			월	일		전수	수량	금액	전수	금액

적요란에는 사유 외에 반드시 조정결의 원인이된 문어의 관련번호를 기

세입금조정결의서발행대장

(Page)

양수기매각대		시설비		과태료		재료매각대		합계		기장
전수	금액	전수	금액	전수	금액	전수	금액	전수	금액	

특한다. (예 : ○○동 ○○○의 5건 부정급수료○○동 ○○○)
 위반처분 No 251, 이의 No 113

(서식제 16 호)

조 정

월 일	적 요	정 기 조 정			수 시 조 정		
		건 수	량	금 액	건 수	량	금 액

집 계 부

과 오 남			감 액			계		
전수	량	금 액	전수	량	금 액	전수	량	금 액

(서식제 17 호)

업 종 별 조 정

197 납기 (종합분)

업종구분	정기조정			수시조정			당월조정합계		
	전수	량	금액	전수	량	금액	전수	량	금액
가 사 용									
영 1 종									
영 2 종									
공 업 용									
목 육 탕 "갑"									
목 육 탕 "을"									
공 설 공 용									
특 수 용									
사 설 소 화 전									
기 타									
급수 사용료합계									
일 시 매 각 대									
급수 관 손 료									
과 태 료									
기 타									

현계표대조필	직 성명	인
--------	---------	---

기재요령

총 합 집 계 표

수도사업소 작성자 직 성명 ()										
조 정 누 계			당월이동내역			이동내역누계			매 전 당	적 요
전수	량	누 계	전수	량	누 계	전수	량	누 계	평 균 조 정 량 (당 월)	

- ※ 이 동내역란에는 환불(주서)과오납, 중당(주서)감액(주서)사항을 기재함. 환불, 과오납
- ※ 이 동내역 누계란에는 감액사항만 계속 누계 표시하며 기타사항은 상호 중당, 감액 상쇄한 잔여 계수를 기재함.
- ※ 당월 조정 매전당 평균량은 소수점이하 첫자리까지 계산기재함.

(서식제 18 호)

급 수 업 종 변 경 신 청 서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사 용 자 기관명 또는 상호옥호

수 전 번 호 용 제 호

변경을 요하는 업종

위 수전에 대한 급수업종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원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유

유 첨 증빙서류

197
신청인

수 도 사 업 소 장 귀 하

- ※ 1 . 사유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써주십시오
- 2 . 증빙서류는 구청장, 동장, 세무서장, 보건소장 등이 발행한 것중 한가지만 첨부하여도 무방함 .

2-29

(서식제 19 호)

부 정 급 수 전 감 시 카 드

검 시 기 록	검 검 월 일	결 과	심 사	계 장	조 치
처 분	처 분 월 일	197	특 기	사 항	
	부 정 급 수 료				
	과 태 료				
	조 치 내 용				
소재지	(동 반) 동 가 번 지		사용자성명		
	부 정 급 수 전		감시번호		

(서 식 제 20 호)

부 정 급 수 전 처 리 및 관 리 대 장

일련 번호	소재지	소유자 사용지	처 분 년월일	처 분 내 용		감시카-드		계 장 확인	감시 해 제		회 수 확 인	비 고 (조점결의번호)
				과태료	분 점 수	수령자인	월일		사유			

(서식제 21 호)

수 납 및 조 정 처 리 부

결 재			징수	징 수 내 역							납 부 자		징수비			
소장	계장	제	월일	실 제 수수로	해 제 수수로	감 독 수수로	이 자	범 위 약 금	상 체 처 분 비	납	접수인	제	주 소	성 명	책 호	고

(서식 제 22 호)

징 수 명 령 부

수명자 : 직 성명 인

일	일	직	요	징수명령		징수불입		과오납		미수입		확인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면에서이월										
			차면으로이월										

(서식제 23 호)

통 화 계 산 서 수 불 대 장

계 장	주 임	계	수 불 상 황					반 납 상 황				주 임	계 장		
			년월일	기호	수	분	잔	사 용 성	지 명	수 령 인	년월일			사 용 매 수	서 손 기 호
			197 .							197 .					
			197 .							197 .					
			197 .							197 .					
			197 .							197 .					
			197 .							197 .					
			197 .							197 .					
			197 .							197 .					
			197 .							197 .					
			197 .							197 .					

(서식제 24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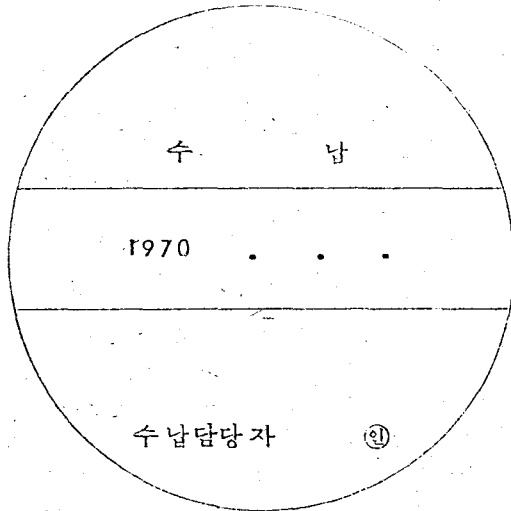
정 수 금 불 입 일 제 표

197 . . . 정수분

연도	과 목 납기	급수사용료	용구손료	합 계	기 타 수 입		
					과 목	건 수	금액
현 년 도					양수기 사용료		
					해제수수료		
					과 태 료		
					실제수수료		
					양수기매각대		
					시 설 비		
					감독수수료		
		합 계				계	
과 년 도					양수기 사용료		
					과 태 료		
					양수기매각대		
					시 설 비		
		합 계				계	
불 입 총 액							
발 행 사	수 금 표						수 납 인
	통좌계산서	조서번호	번호 ~ 매				
	동담당 직		성명 인				

(서 식 제 25 호)

수 남 인



(서 식 제 26 호)

직 원 별 정 수 금 불 입 상 황 보 고 서

197 . . . 수납

불입 구분	현			년			도			불입액					
	급수사용료	급수관손료	기타수입	급수사용료	급수관손료	기타수입	급수사용료	급수관손료	기타수입		합 계				
불입자															
합 계															
										계	계	장	소	장	공
※ 시금고불입서내조자										(인)					
정수일보대조자										(인)					
															람

(서식제 27호)

정 수 일 보

197. . . 수납분

				집 제	제 장	소 장	공
							람
년 도	구 분 남기	급 수 사 용 료	용 구 손 료	합 계	기 타 수 입		정 리
					과 목	건수 금액	
현 도	1				정수해제수수료		
	2				과 태 료		
	3				실 제 수 수 료		※직원별정수상황보고
	4				양수기매각대		대조자 인
	5				양수기시설비		
	6				감 독 수 수 료		
	7						※시금고불입대조
	8						대조자 인
	9						
	10						
	11						※집 제 부 정 리 자
	12						인
	합 계				기 타 수 입 계		
과 년 도	1961						
	1962				과 태 료		
	1963				양수기매각대		
	1964				양수기시설비		
	1965						
	합 계						
총 계					기 타 수 입 계		₩

(서 식 제 29 호)

징 수 상 황 표

197 납기						동	
구분	징수월	납 기 내		납 기 후		채 납 정 리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조 정							
징 수							
과 오 납							
미 수							
징 수 원							
명령부대 조사명인							

※ 건수는 수금포매수 금액은 수금포금액을 표시

※ 업종별 미수집계표를 첨부할것

제	계	장	소	장	결
					재

(서 식 제 30 호)

업 종 별 미 수 액 집 제 표

197 . . 월 납기

동

구 분	납기 내 징수 마감		납기 후 징수 마감		채납 정리 마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가 사 용						
영 업 용						
목 욕 탕						
공 용 급 수						
특 수 용						
소 화 전						
계						
급수관손료						
과 태 료						
양수기매각대						
시 설 비						
합 계						

(서식제 31 호)

체 납 액 미 처 리 사 유 서

197

체 납 자	주 소	구 동 가 번 지 호 (통 반)							
	사용자명					상호·옥호			
	업 종					수전번호			
체 납 액	연 도	납기	금 액	비 고	연 도	납기	금 액	비 고	
미 처 리 사 유	구 분	내 용					비 고		
	체 납 액 승 계 불 능 사 유								
	정 수 처 분 미 시 행 사 유								
	강 제 정 수 조 치 불 능 사 유								
유	기 타 특 기 사 항								
보고자 (과장원)						계	계 장	소 장	결 재
직									
성명									

(서식제 32 호)

<전면>

No. _____

정 수 처 분 및 해 제 조 서

1) 정 수 사 항

수전소재지					
수전소유자			사용자		
수 전 번 호			업 종	업태명	
정 수 사유					
정수년월일					
정 수 방 법					
정 수 지 칩					
정 수 자 직 명			성 명		

특 기 사 항

절	재	심	사	미조정대강정리	점검카-드정리	계	계	장	소	장
및										
내										
장										
정										
리										

2) 해 제 사 항

해 제 사유									
해 제년월일									
해 제 방 법									
해 제 지 칩									
해 제 자 직 명			성 명						
	심	사	미조정대장정리	점검카-드정리	계	계	장	소	장

제 20 호

< 후면 >

채 납 내 역 금 조 서

동 통 반 업종 수전 호 소유자 사용자

구 분 연 도	금 수 사 용 료	가 산 금	봉 손 료	구 양 수 기 사 용 료	양 수 기 매 각 대	과 태 료	계	비 고
계								

197

작성자 직 성명

(서식제 33 호)

정 수 처 분 및 해 제 대 상

결 재			업 종	수전 번호	수 전 소재지	납부자 성 명	정수 월일	체 납액		정수 방 법	해 제			해제 확인		일련 번호	
소장	계장	취급자						전수	금액		완 월	납 일	해 제 일	계 장	소 장		

63-46

제 400 호

시

보

1973.9.6

(서식제 34,35 호)

료 납 기 별 집 계 부

월 납 기 (종)

년		적	조		과 오 납		정		수입 미 제	
월	일		전 수	금 액	전 수	금 액	전 수	금 액	전 수	금 액

12-43

(서식제 36 호)

급 수 사 용 료

197 현재

연도	구분 납기	조 정		전월말현재징수누계		당 월 징 수 액	
		전 수	금 액	전 수	금 액	전 수	금 액
당 년 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과 년 도	'6						
	'6						
	'6						
	'6						
	'6						
	'6						
	계						
합	계						
적	요	과년도 본란은 당년도 이월액		전월말현재대조자 (인)		당월현재대조자 (인)	

납 기 별 수 납 집 계 표

과 오 납		정 수 누 계		미 수 액		비 고
전 수	금 액	전 수	금 액	전 수	금 액	
과오납처리부대조 (인)		당월현재표누계액		체납액집계표대조자 (인)		

(서식제 37 호)

남 기 별 급 수 업 종 별

197 . . . 현재

연도	남 기	가 사 용	영 업 용	복 욕 탕	공용급수	특수용	사설소화전
현 년 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과 년 도	'6이전						
	'6						
	'6						
	'6						
	'6						
	'6						
	계						
합	계						

(서식제 38 호)

이 의 신 정 사 항 조 사 서

197

이 의 신 정 사 항 조 사 자	주 소	동 가 번지 호 (동 반)				
	성 명	업 체 명				
	수 건	업 종 번 호	이 의 신 정 사 항 일 자	접 수 번 호		
이 의 부 분 내 용	이 의	연 도	납 기	조 정 량	납 부 고 지 액	비 고
	부 분					
	사 유					
조 정 경 위	검 칩 상 황				조 정 경 위	
	검 칩 일 자	지 칩 회 전 량	조 정 액	납 기		
					점 검 원	직 성 명 (인)
조 사 내 용						
처 리 의 선						
조 사 자						

(서식제 39 호)

급 수 사 용 료 개 정 조 서

197	조 정	원 부 리	수 납 부 리	취 급 자	조 정 계	정 장	협 정 계	정 장	소 장	결
										재

관 계 수 전	수 전 소재 지	서울특별시 구 동 가 번 지 호			
	수 전 업 종		번 호		
	납 부 자 성 명				

개 정 사 유

개 정 내 용

연 도	기	당 초 조 정		개 정 조 정		증 감		비 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52-52

(서 식 제 40 호)

급 수 업 증 변 경 처 리 부

일련 번호	수 전		주 소	성 명	변 경 업 종	변 경 조 일	업 체 명 변 경 사 유	카드 책 번	확 인	
	종 전 번호	번호							심 사	제 정

(서식 제 42 호)

사 설 소 화 전 연 습 사 용 허 가 원

1. 사설소화전 번호 제 번

2. 수전소제지

서울특별시 구 동 가 번지

사용기판명

사용자 또는 대표자

3. 사용일시

197 . . . 시 분까지
(시간)
197 . . . 시 분까지

위 사설소화전을 연습사용코자 서울특별시 상수도급수조례 제 24 조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197 . . .

신청인 (인)

○ ○ 구 수도사업소장 귀하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49 호

반포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지구내 학교시설변경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제 99 호로 시설 결정된 반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내 학교시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제 123 호 (73.4.4)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3. 9. 5.

서울특별시 장

시 설 변 경 조 서

구 분	용 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국 민 학 교	영등포구동작동 307 번지	9,917	위 치 변 경
변 경	"	관악구동작동 307 번지	9,917	
기 정	중 학 교	영등포구동작동 307-3	18,872	위 치 및 면 적 변 경
변 경	"	관악구동작동 307-3	10,843	
신 설	고 등 학 교	관악구동작동 307-3	18,872	

별첨 : 도면참고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50 호

도시계획사업 (관악공원시설)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제 488 호 (71.8.13)로 결정한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조와 동법 제 26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 호 (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녹지국
공원과 및 관악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
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3. 9. 6.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봉천동산 48번지의외 15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공원시설

명칭 : 낙성대 성역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19,834 m²
(6,000 평)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착공예정년월일 : 1973.11.1.

준공예정년월일 : 1974.12.30.

6) 공 원 조 서

공 원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관악산공원	시내 관악구봉천동 신림동 일원	15,412,070 m ² (4,662,151평)	건설부고시제 488 호 (71. 8. 13)

7) 공 원 내 시설조서

시설구분	조성면적에 대한 비율	면 적		위 치	비 고
			평		
성역 조성	37.8 %	7,500	2,268	별첨현황도참조	
공원 조성	62.2 %	12,334	3,732		
계	100 %	19,834	6,000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
의 권리명세

별첨 : 토지목록 참조.

수 용 토 지 조 서

동 별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봉천동	48-1	산	978 ^평	봉천동산 65-1	6군단택지조성위원회	
"	229	답	247	혹석동 207-73	조 명 원	
"	229-1	"	130	봉천동산 6541	6군단택지조성위원회	
"	229-2	"	444	봉천동 377	김 덕 재	
"	229-3	"	250	대방동 44-6	이 창 근	
"	228	"	727	봉천동 365	김 삼 성	
"	228-1	전	165	" 산 65-1	6군단택지조성위원회	
"	228-2	답	381	" 377	이 중 만	
"	230-1	"	19	" 365	김 이 성	
"	230-2	"	89	" 377	이 중 만	
"	230-4	"	145	" 377	김 덕 재	
"	227	대	506	" 218	최 재 완	
"	225	"	54	" 218	최 재 완	
"	231	전	336	화성군의왕면 440	이 부 기	
"	232	답	6	경성부다우정	박 영 두	
"	265	대	35	봉천동 442	안 고 현	
	계		4,514			

※ 관계도면은 관할 구청 시민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공	고
---	---

◎ 서울특별시 공고제 169 호

1973 년도 전기주입기술자자격

검정 1차시험 합격자발표 및

제 2 차 시험 장소지정

서울특별시 공고제 128 호 (73.6.25)

에 의하여 73.8.30. 실시한 1973
년도 전기주입기술자자격검정 제 1차
시험 합격자와 제 2차 시험의 실시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한다.

1973 년 9월 5일

서울 특별 시장

1. 제 1 차 합격자 수험번호

합격자수험번호	합격자수험번호	합격자수험번호	합격자수험번호	합격자수험번호
25	945	1681	2058	3528
52	975	1717	2059	3559
154	1523	1759	2064	3582
168	1532	1760	2094	3629
232	1545	1791	2112	3634
266	1552	1800	2158	3690
280	1564	1826	2200	4028
441	1571	1877	2222	4205
470	1590	1885	2247	5013
476	1597	1897	3031	5014
576	1601	1900	3119	5118
616	1607	1924	3131	5178
690	1615	1926	3142	5244
703	1626	1933	3169	6014
884	1630	1985	3191	
886	1679	2044	3508	계 78 명

2. 제 2 차 (구 술) 시험 실시

가. 시험일시 : 73.9.14 09:30

나. 장소 :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

다. 응시자격

(1) 73.8.30.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한 3급전기주임기술자자격검정 1차시험합격자

(2) 72.12.28.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한 3급전기주임기술자자격검정 1차시험에 합격하여 2차시험에 불합격되었거나 불응한자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73 응시자제외) 1 통

(2) 학력증명 또는 경력증명 (73 응시자제외) 1 통

(3) 신원증명서 1 통

(4) 주민등록초본 1 통

(5) 이력서 1 통

(6) 사진 4 매 (73 응시자제외)

(7) 수수료 (서울특별시 · 수입증지)

1,000 원 (73 응시자 제외)

다만,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 미제출자는 졸업예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으로 응시한자는 제 2 종 자가용 공작물 사용인가증사본 또는 전기공사업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기간 : 73.9.12 10:00 ~ 17:00

바.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산업국 연료과

사. 제 2 차 시험 합격자 발표

(1) 일시 : 73.9.16 15:00

(2) 장소 : 서울특별시 후정 게시판에 게시 공고함.

아. 응시자는 시험당일 09:30 까지 시험장소에 출두하여 시험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사 령

중 구 지방행정주사 김정식

경기도 전출을 명함.

◎ 1973.9.4.

성명	발령사항	부서	직급
윤준식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규정에의거전책에처함	남부별원	지방약무기좌
신우철	" 전책에처함	양서출장소	지방토목기좌
김도현	" 감봉6월에처함	개량 2과	지방토목기사
임봉호	" 감봉3월에처함	방호담당관실	"
김명호	" 감봉1월에처함	성동구보건소	지방수의사보
채한진	" 감봉6월에처함	토목시험소	지방토목기사보
정해운	" 감봉3월에처함	영등포구	"
김봉식	" 감봉3월에처함	구획정리 2과	지방토목기원보

1. 73년도 당시 공무원교육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훈련이수를 위한 인사발령이 있었기 통지함.
가. 장소 :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나. 기간 : 73.9.17 ~ 73.9.29 (2주간)
다. 등록 : 73.9.26 ~ 73.9.27 사이에 동교육원에 등록을필할것.

파견근무자명단

성명	발령사항	부서	직급
이상훈	73.9.17~9.29 까지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명함 (제 5기 일반행정반)	총무과	지방행정서기
허응도	"	안전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
안길수	"	환경과	"
유경상	"	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배호	"	문화공보실	지방행정주사
심상용	"	"	지방행정주사보
이철수	"	시민과	지방행정주사

성 명	발 령 사 항	부 서	직 급
정 원 섭	73.9.17~9.29 까지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명함(제 5기일반행정반)	시 민 과	지방행정주사
조 경 호	"	시정개발담당관실	"
강 수 응	"	상 정 과	"
신 현 담	"	청 소 2 과	지방행정주사보
조 완 목	"	연 로 과	"
박 승 제	"	하 수 과	지방행정서기
김 일 호	"	종로구세무 2과	"
신 균 식	"	"	"
김 공 수	"	중 구 청 소 과	"
이 천 수	"	중 구 세 무 2과	"
정 현 식	"	동대문구총무과	"
오 준 석	"	동대문구청신3동	"
정 두 찬	"	성동구신당 7동	지방행정주사보
이 기 연	"	성 동 구 주 택 과	"
하 태 증	"	성 북 구 총 무 과	"
이 무 명	"	성 북 구 세 무 1 과	지방행정서기보
윤 영 원	"	도봉구세무 1 과	지방행정주사
유 병 길	"	"	지방행정서기
이 규 환	"	서대문구주택과	지방행정주사
박 금 응	"	" 총무과	지방행정서기
김 병 우	"	용 산 구 청 소 과	지방행정주사
손 인 목	"	" 주 택 과	지방행정서기
박 시 규	"	영 등 포 구 총 무 과	지방행정주사보
고 연 상	"	" 청 소 과	"
원 유 봉	"	관악구청소과	"
김 기 정	"	" 총 무 과	지방행정서기
차 원 철	"	방역사무소	지방행정주사
서울특별시			